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방통위원·방심위원의 기피신청 규정 보완 >
■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26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방통위원·방심위원의 기피신청 규정 보완(안 제1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해민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4. 8. 14.

다. 회 부 일 : 2024. 8.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의 제척·기피·회피 신청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기피당한 위원의 기피신청 결정 배제나 의사진행 정지 등의 규정은 미비함.

이로 인해 기피당한 위원이 본인의 기피신청을 스스로 각하하거나, 기피신청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등 기피신청제도가 형해화 되어 기피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YTN 최대주주변경 승인 결정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계획안 의결 당시 제기된 기피신청에 대해 외부의 법률자문 없이 기피당한 위원장과 위원이 스스로 기피신청을 각하시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가 법정제재에 대한 재심요구시 제기한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스스로 각하하면서 사유 조차 공개하지 않았음.

이에 기피당한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피신청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의 진행을 중지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1. 방통위원·방심위원의 기피신청 규정 보완(안 제1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기피와 관련하여, 기피 대상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피신청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의 진행을 중지하도록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③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이 기피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기피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같은 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은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제4

현 행	개 정 안
④ (생 략)	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⑧ (현행 제4항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¹⁾는 방통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23조에서 방심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제14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방통위원·방심위원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척됨
-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어려운 사정이 있어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될 수 있음.

- 또한,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음.

○ 방통위의 기피신청에 따른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결을 통하여 결정하고 있음.

- 23년 이후 방통위 기피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4건, 2024년 2건 등 총 6건의 기피 신청이 있었으며, 의결 결과 1건은 기각, 5건은 각하 결정되었음.²⁾

○ 방심위의 경우 특정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안건 당사자가 공문으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해당 위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기피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하였음.

- 23년 이후 방심위의 기피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방심위 전체회의의 경우 23년에 1건의 기피신청(기각)이 있었고, 소위원회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기피신청은 없었음.

○ 개정안은 법 제14조제3항의 기피제도에 대하여,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의무화하고(안 제14조제5항), 기피신청 대상

2)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각하사유는 기피 신청권의 남용이고, 방통위는 구체적인 기피신청 사유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 내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음.

의원을 의결에서 배제하며(안 제14조제6항),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을 때까지 안전에 대한 심사를 정지(안 제14조제7항) 하여 현행법상 기피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방통위·방심위 회의의 심의·의결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개정안은 6기 방통위원이 2인이었다가 현재 1인이고, 현재 6기 방심위원이 3인인 상태에서 기피당한 위원이 본인의 기피신청을 스스로 각하하거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안전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기피신청제도가 형행화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임.

○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사실상 회피 제도로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의무화하는 규정에 대해서는(안 제14조제5항)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항³⁾의 의견서 제출 규정에 따라 위원들이 필요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을 받은 의원의 의결 참여를 배제하고, 안전 진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안 제14조제6항·제7항)에 대해서는, 방통위

3)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안전의 구분 등) ④ 위원은 안전별로 개별 보고 받은 후 의견이 있을 경우 회의 전일까지 사무처(간사)에 별지 제 8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원에 대한 기피신청시 인용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안건 심의·의결에 해당 의원을 제외할 경우 기피 신청권의 남용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 입장임.

- 방통위는 관련 규정의 도입은 행정의 공백 및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한 안전 처리가 지연될 수 있고, 합의제 행정기관의 기피신청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대부분의 법령들⁴⁾은 행정작용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기피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절차를 중지하지 않으며, 기피신청권의 남용을 방지

4) < 기피신청 관련 입법례 >

구 분	관련 규정
개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1(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금융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회의 등) 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권익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②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⑤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소법	형사소송법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①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분쟁조정협의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제2항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조정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기피신청을 각하한다.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하기 위한 보완 규정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방심위도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형해화된 기피신청 제도를 구체화하여 기피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방통위법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의의 안정적 운영 측면과 및 기피신청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한 기피신청자의 권리보장 측면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 입장임.
- 조문별로 검토해보면, 안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현행법 제14조제4항의 회피 규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별도의 입법취지가 있다면 법문언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법상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데, 안 제14조제4항은 “위원이 기피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하고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상 제척·기피·회피 및 개정안 비교 >

구분	제척 (제14조제1항·제2항)	기피 (제14조제3항)	회피 (제14조제4항)	개정안 (안 제14조제4항)
절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	당사자의 신청→위원회의 의결	위원 스스로 결정	당사자의 신청→위원 스스로 인정(기피 결정으로 간주)

구분	제척 (제14조 제1항·제2항)	기피 (제14조 제3항)	회피 (제14조 제4항)	개정안 (안 제14조제4항)
사유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척 또는 기피 사유	기피 사유

- 개정안의 취지가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이 스스로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결로 결정하는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것이라면, 아래 수정의견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5)

현 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③(생략)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③(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③(현행과 같음)
<신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	④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당한 위원이 스스로

- 5) ※입법례 「군사법원법」 제52조(기피신청 기각과 처리) ①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51조에 위반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 또는 재판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② 기피를 당한 재판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기피를 당한 재판관이 기피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현 행	개정안	수정의견
	<u>이 기피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기피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u> <u><신 설></u>	<u>로 기피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기피 신청에 대해 이유 있다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안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있다.</u>

○ 다음 안 제14조제7항과 관련 유사입법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⁶⁾은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2조⁷⁾는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음.

○ 다음 안 제14조제6항과 관련하여 유사입법례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1제2항⁸⁾은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원의 기피·회피)⑤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형사소송법」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8) 「사립학교법」 제24조의11(위원의 기피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종합해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회피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방통위·방심위 회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 및 현행법상 회피제도로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방통위·방심위의 신중 검토의견, 법문언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수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226